

등록번호	정책기획담당관-441
등록일자	2016.1.11.
결재일자	2016.1.11.
공개구분	부분공개(5)

주무관	예산팀장	정책기획담당관	부구청장
권세호	김정현	임근래	01/11 조인동
협 조			

2016년 기금운용 기본계획



서 대 문 구
정책기획담당관

2016년 기금운용 기본계획

일반회계와 구분되는 기금의 특수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을 확립하여,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재정건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I 개 요

- 설치현황 :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
- 총 규 모 : 15,768백만원
- 기금현황

(단위:백만원)

기 금 명	소관부서	설치근거별	규모		증감
			2016년	2015년	
계			15,768	15,844	△76
1. 중소기업육성기금	일자리경제과	법정재량	3,370	4,832	△1,462
2. 사회복지기금(자활계정)	사회복지과	자체기금	1,286	1,260	26
3.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	사회복지과	자체기금	558	584	△26
4.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	어르신복지과	자체기금	541	556	△15
5. 성평등기금	여성가족과	자체기금	1,188	1,195	△7
6.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	청소행정과	자체기금	606	1,286	△680
7. 난지음식물류자원화시설운영기금	청소행정과	자체기금	1,638	-	1,638
8. 옥외광고정비기금	건설관리과	법정의무	1,047	605	442
9. 도로굴착복구기금	토 목 과	자체기금	1,296	1,438	△142
10. 재난관리기금	안전치수과	법정의무	3,084	3,012	72
11. 식품진흥기금	보건위생과	법정의무	1,154	1,076	78

II 기금운용의 문제점

기금의 목적외 사용

-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운용하여야 하나, 당초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운영
 - 공모과정에서 기금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 선정되는 사례 발생
 -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 없이, 관례적으로 운영비 등 지급

일반회계 자원부족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 활용

- 일부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사업을 기금재원으로 운용
 -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기금재원을 활용하여 사업 수행

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용

- 결산, 성과분석, 운용계획수립, 공모사업 선정 등의 기금심의 시, 서면심의를 통해 형식적인 위원회 운용

■ 최근3년 대면심의 개최 횟수

기금명	부서명	대면심의 개최횟수			비고
		2013년	2014년	2015년	
	계	5	2	11	
중소기업육성기금	일자리경제과	0	0	3	
사회복지기금 (자활, 장애인, 노인)	사회복지과	1	0	0	
	어르신복지과				
성평등기금	여성가족과	2	1	2	
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	청소행정과	0	0	0	
난지음식물류자원화시설운영기금		0	0	1	
옥외광고정비기금	건설관리과	0	0	2	
도로굴착복구기금	토목과	2	1	2	
재난관리기금	안전치수과	0	0	0	
식품진흥기금	보건위생과	0	0	1	

※ 2015년에 대면심의를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개최실적 없음.

III 중점 추진사항

□ 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

-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계획(안)수립, 기금계획변경, 공모사업선정 시 모니터링 강화
 - 기금 지출계획 수립(기금운용계획 수립)시 기금 조례 및 설치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 하였을 경우 예산부서 협의·심의 과정에서 미편성조치 등 모니터링 강화

□ 기금의 성과분석을 통한 폐지여부 등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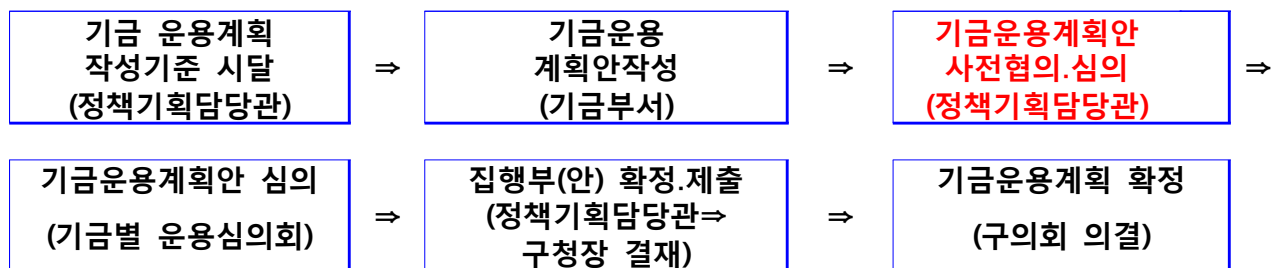
- 설치목적에 달성하였거나,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폐지·통합 검토

IV 세부 추진방안

□ 기금운용의 사전 통제기능 강화

- 기금운용계획 수립, 변경시 예산팀의 사전 협의 등 통제기능 강화

<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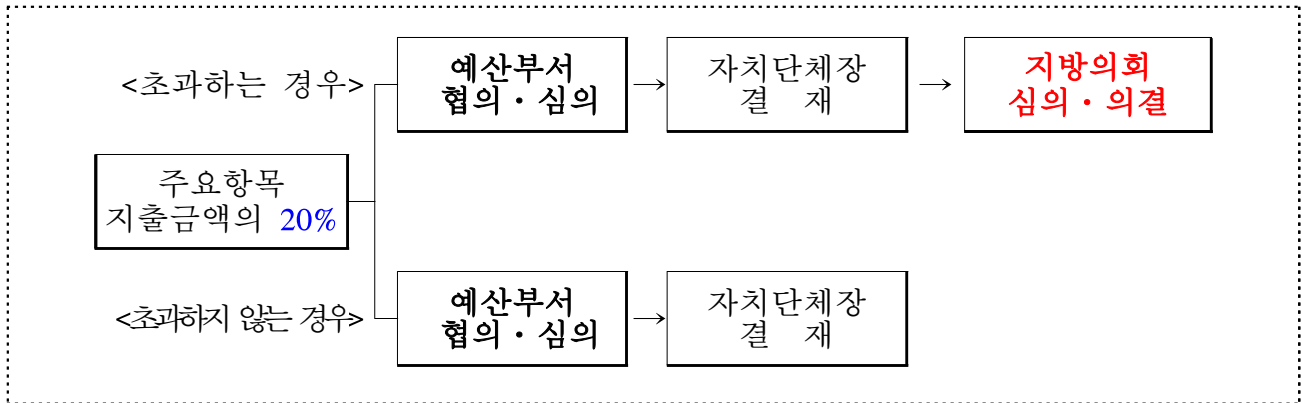


- 법령,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(시설운영비 등) 미편성
 - 반드시 편성이 필요할 경우,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

□ **주요사업(정책사업 기준)의 20% 초과 변경사항 발생 시, 미리 구의회 의 승인필요**

○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기금법 개정

☞ 2015. 7. 6. 본회의 의결, 시행(2016. 1. 1)



□ **기금성과분석 강화**

○ 1년간 기금 운용의 잘한점 및 문제점,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

- 형식적이고 관례 답습적인 분석을 지양하고, 기금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, 기금운용위원회의 대면심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

□ **기금운용계획 수립, 기금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위원회의 대면심의 강화**

○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기금운용계획수립, 기금성과분석 등의 심의 시, 관행적인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 실시

- 결산과 성과분석 등 다소 중복되는 내용을 심의할 경우, 통합운영 검토 및 결산심의 시 예외적으로 서면심의 허용(성과분석의 경우 대면심의 실시)

※ 시급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의 금지.

V

향후 주요일정

- 2015회계연도 기금 운용 결산 2월~3월
 - 「서대문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항」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
- 2015회계연도 기금 운용 성과분석 7월~8월
 -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성과를 분석하고,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자부장관에게 제출
-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9월~11월
 - 「지방기금법 제8조, 제9조」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
-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확정 12월
 - 구의회 심의를 거쳐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 확정

끝.